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사업운영규정

제정 2009.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동명대학교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 “본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2. 프로스포츠 및 용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3.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부수되는 사업
4. 실습기자재확충 및 교재개발
5. 현장실무실습, 인턴십, 취업활성화
6. 각 호에 부수되는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규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학과를 연계한 사업 실무팀을 둔다.

1. 체육학과

② 사업단장은 전임교수 이상의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 조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종료일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단장의 귀책 등으로 “본 사업단”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으로 사업단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본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 구성과 전담요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 구성 및 전담인원의 배정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사업단”은 사업 실무팀과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 ①“본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 실무팀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단 사업의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한다.
- 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⑥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⑦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또는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단 및 사업의 주요 계획 및 운영
 2. 기타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재정

- 제7조(재정)** ①“본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지원금과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대응자금, 기타 교육생수강료 등으로 한다.
- ②“본 사업단”의 재정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집행 및 정산)** ①“본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집행지침과 관련 법률,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 규정에 따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령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차년도 사업개시일인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